

3. 宅地所有上限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501號 1992. 3. 7
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중 “영 제2조제2호”를 “영 제2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 (부설주차장용 토지) 영 제3조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영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(당해 건축물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토지로 한다) 안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의 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영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으로 본다.

제 4 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의2·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5 조의2 (장학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의 조건) 영 제12조제2호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방법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증여받은 택지의 전부를 그 증여받은 날

부터 2년이내에 장학사업에 사용할 것.

2. 증여받은 택지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중 법인세·소득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장학사업에 사용할 것

3. 장학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·직업·근무처·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주무부장관이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장학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증여받은 택지를 증여자(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)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지 아니할 것

5. 장학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잔여택지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장학사업을 하는 다른 장학법인에 귀속시킬 것

6. 증여받은 택지를 장학사업을 종료하는 때까지 다른 토지와 교환하지 아니할 것

제11조의2 (지가변동율의 적용) ①영 제

2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율은 시·군·구별 변동율을 적용하되, 당해 택지의 종류 및 지목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용한다.

1.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및 개발토지는 주거용 대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한다.
2. 나대지로서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대지의 지가변동율을, 상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상업용대지의 지가변동율을, 공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한다.

②부담금 부과기간의 지가변동율은 분기별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산정하되, 분기중 일부기간의 지가변동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
$$\text{분기중일부기간의 지가변동율} = \text{당해분기의 지가변동율} \times \frac{\text{부담금의 부과기간의 일수}}{\text{당해분기의일수}}$$

제12조의2 (부담금의 납부기한) 영 제32

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부담금의 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: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월
2. 부담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2월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 이유 □
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(1992. 3. 7. 대통령령 제13,610호)됨에 따라 장학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의 조건·지가변동율의 적용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기한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 □

- 가.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나대지에서 제외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, 당해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내부 또는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제외함(제2조의2).
- 나.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택지의 사용조건을 정함(제5조의2).
- 다. 초과소유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택지가격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바, 지가변동율은 시·군·구별로 택지의 종류 및 지목에 따른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함(제11조의2).
- 라.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부담금의 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월로, 부담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2월로 정함(제12조의2). 〈건설부 제공〉